

# 새 정부의 아동가구 현금지원 정책과 향후 과제

박은정 연구위원

새 정부의 대통령 선거 공약에는 아동가구 현금지원 정책공약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 18세까지 점진적 확대,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자녀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 상향, 자녀세액공제 추가 확대, 초등학생 자녀 예체능·체육활동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공약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사회 구축을 위한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현금지원 제도와 함께 복합적인 사회구조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현금급여 지급액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소득계층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중하고 세밀한 세부 제도 설계가 요구된다.

## 1. 들어가며

2025년 6월 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현재 새 정부는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등 국정 운영을 위한 로드맵을 설계하고 있다. 아직 새 정부의 세부적인 국정과제가 발표되지 않았으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발표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을 통해 육아 정책 분야의 정책 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약으로 ‘회복’, ‘성장’, ‘행복’이라는 3대 비전과 15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중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비전에는 총 7개의 정책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생활안정’과 ‘저출생·고령화 대응’ 정책과제에 아동가구 대상 현금지원 분야 공약이 포함되어 있다.

현금지원에는 직접적인 현금 통화를 지원하여 소득을 보장해주는 방식 외에도 가처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세제 지원 등도 포함된다<sup>1)</sup>. 이재명 정부는 직접 현금급여 지원인 아동수당 확대 방안 외에 다양한 세제지원과 금융지원 공약을 중심으로 아동가구 현금지원 정책 공약을 제시하였다.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1) 「박은정, 유해미, 조혜주, 김연진, 서효진, 정은희(2024). 육아정책의 발전적 로드맵 제시를 위한 현금급여 제도 발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재인용.

〈표 1〉 이재명 정부의 아동가구 현금지원 정책 공약

| 정책과제           | 정책공약                                   | 현금지원 정책 내용                                                                                   | 지원 방식 구분       |
|----------------|----------------------------------------|----------------------------------------------------------------------------------------------|----------------|
| 9. 생활안정        | ③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 아동수당 18세까지 점진적 확대                                                                          | 아동 대상 직접 현금 지원 |
|                | ⑤ 최후의 생활안전망을 강화하여 '빈곤층 제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 자녀장려금(CTC)의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저소득 아동가구 세제지원  |
| 13. 저출생·고령화 대응 | ① 결혼·출생 지원을 확대하여 미래에 대한 부담과 걱정을 덜겠습니다. | • 우리아이자립펀드 단계적 도입<br>• 신혼부부 결혼·출생 지원 확대                                                      | 결혼·출생·양육 금융지원  |
|                | ③ 소득세 체계를 가족친화 방식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 부부단위 과세표준 <sup>1)</sup> 신설 추진<br>• 가족 친화적 소득세체계로의 개편방안 마련                                  | 가족단위 세제개편      |
|                | ④ 자녀양육을 위한 세제혜택을 강화하겠습니다.              | • 자녀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 상향<br>• 자녀세액공제 추가 확대<br>•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학원·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 추가 | 자녀양육 세제지원      |

자료: 더불어민주당(2025).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이재부터 진짜 대한민국. 참조하여 재작성함.

선거 공약에서 아동가구 현금지원 분야 공약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본고는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선거 공약 중 아동가구 현금지원 분야 공약을 아동수당 확대, 금융지원, 세제지원으로 구분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 아동 및 아동가구 대상 현금지원 정책 현황과 비교하여, 대선 정책공약이 각 정책의 확대·개편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이슈 및 쟁점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단, 본고는 현금지원 중 아동 대상에만 초점을 두고자, 정책공약 중 아동가구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 부부 및 가족을 단위로 한 소득세 체계개편 내용과 결혼 및 출생 장려금 성격의 신혼부부 결혼·출생 지원금 제도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 2. 공약 및 관련 정책 현황

### 가. 아동수당

#### 1) 현행 정책 및 지원 현황<sup>2)</sup>

2013년 무상보육이 도입됨에 따라 보육·교육비 보편 지원이 시작되었고, 가정양육수당도 2013년부터 0~5세 아동에게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가정양육을 할 경우 보편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아동수당 도입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으나, 막대한 재정 투입을 이유로 도입이 지연되어 2018년에서야 「아동수당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해 9월부터 실시되었다.

아동에 대한 보편적 소득보장 정책의 핵심 제도인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

2) 「박은정, 유해미, 조혜주, 김연진, 서효진, 정은희(2024). 육아정책의 발전적 로드맵 제시를 위한 현금급여 제도 발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를 참조하여 작성함.

〈표 2〉 아동수당 지원대상 및 예산 추이(2018~2025)

단위: 만명, 억원, %

|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지원대상<br>(만명) | 238   | 247                    | 263.5  | 247.2  | 273.2  | 249.9  | 233.8  | 214.8  |
|              | 0~5세  | 0~5세/<br>0~6세<br>(9월~) | 0~6세   | 0~6세   | 0~7세   | 0~7세   | 0~7세   | 0~7세   |
| 총 예산(억원)     | 7,096 | 21,627                 | 22,834 | 22,195 | 24,039 | 22,564 | 21,115 | 19,587 |
| 전년 대비 증감(%)  | -     | 204.8                  | 5.6    | - 2.8  | 8.3    | -6.1   | -6.4   | -7.2   |
| 국고보조율(%)     | 73.5  | 72.89                  | 72.89  | 75.1   | 73.6   | 75.6   | -      | 76.29  |

자료: 1) 보건복지부(2023).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개요. p.90.

2) 보건복지부(2024).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개요. p.54.

3) 보건복지부(2025).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개요. p.49.

4) 박은정 외(2024). 육아정책의 발전적 로드맵 제시를 위한 현금급여 제도 발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52를 보완하여 작성함.

도이다. 그러나 2018년 도입 당시 6세 미만 아동만을 대상으로 100분의 90 수준 이하의 소득 기준을 적용하였다. 2019년 4월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보편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아동 지급연령을 7세 미만으로 확대하였고, 2022년 4월부터 8세 미만으로 확대하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동수당이 초기 아동기인 8세 미만까지만 포괄하고 있으며, 지급액도 도입 당시 월 10만원에서 지급액 조정 없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다.

아동수당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지원대상수는 아동수당이 도입된 2018년 238만 명에서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지급연령을 7세로 상향한 2019년과 이듬해인 2020년에는 규모가 증가하였다가, 2021년에 출생아 수 감소로 다시 감소하였다.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8세로 상향한 2022년에는 273만2천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후에는 출생아 수가 감소함에 따라 아동수당 수급 아동의 수가 다시 감소하여 2024년에 233만8천명까지 감소하였다. 아동수당 도입 이후 지급액의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아동수당 예산

은 아동수당 지원 아동 규모에 따라 동반 증감하는 양상을 보인다. 아동수당을 도입한 2018년 예산은 7,096억원이며, 아동수당 지원대상수가 증가한 2019년에는 2조 1,627억원으로 증가하였다. 2023년 이후 아동수당 예산은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25년 기준으로 아동수당 예산은 1조 9,587억원이다.<sup>3)</sup>

## 2) 공약: 아동수당 확대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의 ‘생활안정’ 정책과제에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구축이 제시되어 있으며, 해당 과제에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미 2024년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총 7개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모든 관련 발의안에는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을 18세 미만 또는 18세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3개의 발의안은 아동수당 지급액을 매월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30만원, 50만원, 매년 물가변동을 연동과 같은 지급액 상향

3) 보건복지부(2025).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개요.

〈표 3〉 2024년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안 주요 내용

| 발의안                          | 주요 내용                                                                                                                                        |
|------------------------------|----------------------------------------------------------------------------------------------------------------------------------------------|
| 전진숙의원 대표발의<br>(2024. 6. 5.)  |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는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그 금액 또한 현행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
| 박성준의원 대표발의<br>(2024. 6. 14.) | 아동수당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의 연령인 18세 미만까지 지급하고 그 금액 또한 5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등).                                                            |
| 한병도의원 대표발의<br>(2024. 6. 18.) | 가. 아동수당의 수급 연령을 18세 미만까지로 확대함(안 제4조제1항제2호 신설).<br>나. 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의 금액을 유지하되, 신설되는 8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2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함(안 제4조제1항). |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br>(2024. 6. 20.) | 아동수당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의 연령인 18세 미만까지 지급하고 그 금액 또한 매월 3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려는 것임(안 4조제1항 등).                                                          |
| 박민규의원 대표발의<br>(2024. 7. 5.)  | 1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이라는 아동수당법의 목적에 더욱 충실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등).                                           |
| 황정아의의원 대표발의<br>(2024. 8. 5.) |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18세 이하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여 아동의 복리증진 및 양육환경 개선을 통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등).                                          |
| 김태년의원 대표발의<br>(2024. 9. 13)  |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19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한편, 아동수당 금액을 매년 물가변동률과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아동수당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등).                                          |

자료: 대한민국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 (2024. 9. 30. 인출); 박은정 외(2024). 육아정책의 발전적 로드맵 제시를 위한 현금급여 제도 발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244에서 재인용.

방안이 제시되어있다.

이미 여러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대선 공약에서 아동의 보편적 권리 보장 관점에서 대선공약에 포함된 만큼 아동수당 지급연령의 상향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나. 금융 지원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저출생·고령화 대응’ 정책과제에는 크게 2가지 금융지원으로 우리아이자립펀드 단계적 도입 및 신혼부부 결혼·출생 지원금 대출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아동대상 지원인 우리아이자립펀드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 1) 현행 관련 정책

새 정부에서 제시한 우리아이자립펀드와 유사한 현행 제도로는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

원계좌)’이 있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모든 아동을 포괄하는 보편적 자산형성 지원제도라면,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이 사회진출 시 소요되는 초기 비용을 위한 장기적인 자산형성 지원 제도이다. 이는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 도움으로 월 5만원까지 적립하면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최대 월 10만원까지 지원한다. 국가 매칭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월 최대 5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적립금은 학자금, 창업지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주거마련 지원 등 18세 이후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다. 24세에 도달할 경우 사용 용도에 상관없이 지급이 가능하다<sup>4)</sup>.

## 2) 공약: 우리아이자립펀드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정부가 아동 전용 펀드를 도입하여 월 10만원씩 적립해주고 부모가 월 10만원을 매칭해서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아이자립펀드 기금은 아동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중도인출이 제한되며, 학비·창업비용 등 목돈이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사용 용도를 제한한다. 또한 펀드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는 소득세 면제, 증여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이 제도는 학교 금융·경제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교육효과도 제고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국가가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며, 부모가 동일한 금액을 적립 가능하도록 하여 노력 여하에 따라 두 배의 자산형성도 유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전액 비과세로 하여 실효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디딤씨앗통장 제도와 유사한 점이 있으나, 정부 매칭이 취약계층에 한정되었고 월 최대 5만 원으로 규모가 작았던 기존 디딤씨앗통장 제도에 비해 지원규모가 훨씬 크고 광범위하다.

## 다. 세제 지원

더불어민주당의 아동가구 대상 세제 지원 공약에는 크게 4가지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자녀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과 공제한도 상향, 자녀세액공제 추가 확대,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학원·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

제대상에 추가, 자녀장려금(CTC)의 대상 및 지급액 확대이다.

### 1) 현행 정책

#### 가) 신용카드 소득공제<sup>5)</sup>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연말정산에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근로소득자가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가 공제율로 적용된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체육비 사용 등은 추가 공제율이 적용된다.

공제한도는 연간소득에 따라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다만, 전년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의 경우는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보험료, 교육비(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및 기타 공급금), 국세 및 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 아파트관리비 등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나) 자녀세액공제<sup>6)</sup>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 외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다자녀추가공제 제도가 운영되었으나, 2014년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되고 자녀세액공제 제도로 통합되었다.

자녀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에 근거한다. 현재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양하는 자녀인 공제대상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 중 8세 이상인 경우,

4) 보건복지부(2025). 2025 아동분야 사업안내 2.

5)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2025. 6. 23 인출)

6)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126&ccfNo=1&cciNo=1&cnpClsNo=1#copyAddress&search\\_put=](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126&ccfNo=1&cciNo=1&cnpClsNo=1#copyAddress&search_put=)

〈표 4〉 자녀세액공제 공제금액

| 기본공제  |                                    | 출산 또는 입양 신고 시 |        |
|-------|------------------------------------|---------------|--------|
| 자녀수   | 공제금액                               | 출생순위          | 공제금액   |
| 1명    | 연 25만원                             | 첫째아           | 연 30만원 |
| 2명    | 연 55만원                             | 둘째아           | 연 50만원 |
| 3명 이상 | 연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br>연 40만원 합산 금액 | 셋째아 이상        | 연 70만원 |

자료: 법제처(2025). 찾가쉬운 생활법령 정보. 다자녀 가구. pp.40~41을 참조하여 작성함.

자녀수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 지급연령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과 연동된다. 아동수당이 8세 미만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 지급연령은 8세 이상부터이다.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원,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55만원이 세액공제 된다. 3명 이상인 경우는 연 55만원에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추가하여 공제한다. 또한 과세기간에 출산 또는 입양 신고를 한 경우, 첫째 자녀는 연 30만원, 둘째 자녀는 연 50만원, 셋째 자녀는 연 70만원이 세액에서 공제된다.

#### 다) 교육비 세액공제<sup>7)</sup>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일반 교육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 지출 비용을 연말 정산 시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본인 일반 교육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한도가 없으며, 부양가족의 경우는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이다. 세액공제율은 교육비 납입금액의 15%이다.

초등학생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수업료는

공제대상에 포함되나, 학원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만 학원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라) 자녀장려금(CTC)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자녀장려세제를 적용하여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2024년 자녀장려금 대상의 소득 기준이 연 4천만원에서 7천만원 상향되었으며, 자녀장려금 상한액은 부양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되었다.

자녀장려금 적용은 18세 미만 부양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은 국적자 및 국적자와 혼인상태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부여된다.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기준으로는 부양자녀수 외에도 맞벌이 가구 여부와 가구 총소득 및 자산규모가 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소득활동(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등)을 하는 자이어야 하며, 부부합산소득을 기준으로 연 7천만원 미만의 소득자이어야 한다.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

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라 자녀장려금 총급여

7) 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9024&mi=40612>; 국세상담센터. <https://call.nts.go.kr/call/q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10>



〈표 5〉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산정

| 구분           |            | 홀벌이 가구                                                |                                                               | 맞벌이 가구             |                                                            |
|--------------|------------|-------------------------------------------------------|---------------------------------------------------------------|--------------------|------------------------------------------------------------|
| 신청자격         | 소득기준       |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br>거주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 7천만원 미만 |                                                               |                    |                                                            |
|              | 자산기준       |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                                                               |                    |                                                            |
|              | 자녀기준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                    |                                                            |
|              | 기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br>국적자와 혼인상태 또는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                    |                                                            |
| 자녀<br>장려금 산정 | 총급여액<br>기준 | 2천100만원 미만                                            | 2천100만원 이상 7천만원<br>미만                                         | 2천500만원 미만         | 2천500만원 이상<br>7천만원 미만                                      |
|              | 자녀<br>장려금  | 부양자녀의 수 x<br>100만원                                    |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br>- (총 급여액 등 -<br>2천100만원) x<br>4천900분의 50] | 부양자녀의 수 x<br>100만원 |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br>(총 급여액 등 - 2천500만원)<br>x 4천500분의 50] |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8~29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6호, 2023. 12. 31., 일부개정]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작성; 박은정 외(2024).  
육아정책의 발전적 로드맵 제시를 위한 현금급여 제도 발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61에서 재인용.

액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홀벌이 가구는 2천 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천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부양자녀수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각각의 기준 이상의 소득을 가진 홀벌이, 맞벌이 가구는 각각의 지급액 산정식에 근거하여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의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

## 2) 공약: 세제지원 확대

현 정부의 대통령 선거 공약에 포함되어 있는 세제지원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수에 따라 신용카드의 소득 공제율을 5%p에서 최대 20%p까지 상향하고, 공제한도도 100만원 상향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맞벌이 가구가 신용카드를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율은 25%, 공제한도는 400만원으로 상향된다.

둘째, 확대된 자녀세액공제 제도를 추가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포함되어 있다. 아직까지 자

녀세액공제 확대 금액을 확정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다.

셋째, 초등학교 자녀의 예체능학원·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 추가하는 공약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 취학 전 자녀의 사교육비만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었으나, 학교 방과후에 체육시설 등 예체능 시설을 이용하는 맞벌이 부모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자녀까지는 예체능학원·체육시설 이용료를 세액공제에 포함하는 공약이다. 기존에 초중고 자녀는 공교육에서 발생하는 비용만 공제받고 사교육 비용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었으나, 해당 공약으로 사실상 사교육비 일부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넷째, 자녀장려금의 대상 및 지급액을 확대하여 근로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이 포함되어 있다. 대선 과정에서 자녀장려금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자녀수 기준으로 가구당 지원 총액을 높이겠다는 방향성은 제시하였으나, 소득기준과 지급액 상향 안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여, 정책 공약을 통해 변경되는 정책 내용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 3. 주요 쟁점

#### 가. 기본사회 구상에서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관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동가구에 대한 현금지원의 확대도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를 통한 기본사회 구상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아동도 독립된 시민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일정 소득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아동의 기본권 보장 관점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동수당과 자녀장려금 등을 통해 생애 초기에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출발선의 격차를 완화하고, 미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자립형 펀드를 도입하여 아동기부터 청년기에 이르는 소득보장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요컨대, 아동가구 현금지원 정책공약들은 기본사회 구상에서 생애초기 소득보장을 정책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적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공고히 하고 강화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 나. 안정적 재원 확보 문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표 6> 새 정부 정책공약에 따른 정책 도입 및 변경(안)

| 구분         | 기존 정책                                                                                                                                                                | 정책 변경(안)                                                              |
|------------|----------------------------------------------------------------------------------------------------------------------------------------------------------------------|-----------------------------------------------------------------------|
| 아동수당 지급연령  | • 8세 미만                                                                                                                                                              | • 18세                                                                 |
| 아동 대상 자립펀드 | • 디딤씨앗통장<br>-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아동 대상<br>- 후원자 및 보호자 월 5만원 적립 + 1:2로 국가 (월 10만원)가 지원                                                                   | •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br>- 18세 이하 모든 아동<br>- 국가가 월 10만원 적립 + 부모가 월 10만원 매칭 납입 |
| 신용카드 소득공제  |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사용금액의 15% 공제<br>• 공제한도 300만원                                                                                                                            | • 자녀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5%p~20%p 상향<br>• 공제한도 400만원                      |
| 자녀세액공제     | • 자녀 1명: 연 25만원<br>• 자녀 2명: 연 55만원<br>• 자녀 3명 이상: 연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연 40만원 합산                                                                                       | • 자녀세액공제 추가 확대<br>- 구체적인 확대 금액 미발표                                    |
| 교육비 세액공제   | • 취학 전 자녀의 사교육비만 세액공제 대상                                                                                                                                             | • 초등학교 자녀의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이용료까지 세액공제에 포함                                 |
| 자녀장려금      | • 소득기준<br>- 홀벌이: 2천100만원/2천200만원~7천만원 미만<br>- 맞벌이: 2천500만원/2천500만원~7천만원 미만<br>• 지급액: 소득구간,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br>- 부양자녀당 100만원 or 부양자녀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지급액 산정식에 근거) | •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br>- 구체적인 소득기준 및 지급액 상향 방안 미발표                    |



〈표 7〉 아동수당 지원 대상 및 지급액 상향 시 소요재정 추계

단위: 천명, 억원

| 구분          |          | 현행<br>(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
| 대상자수        |          | 2,346        | 6,625    | 6,358    | 6,136    | 5,931    | 5,700    |
| 아동수당<br>지급액 | 물가상승률 반영 | 28,152       | 91,663.2 | 90,334.8 | 89,536.8 | 88,893.6 | 87,757.2 |
|             | 월 20만원   | 28,152       | 159,000  | 152,592  | 147,264  | 142,344  | 136,800  |
|             | 월 30만원   | 28,152       | 238,500  | 228,888  | 220,896  | 213,516  | 205,200  |

주: 1) 현행 대상자 수는 장애인구추계 연령별 데이터를 사용하여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대상자수와 차이가 있음.

2) 물가상승률은 최근 5년간(2019년 1월~2024년 1월) 매년 물가상승배수 평균인 1.027을 적용 2025년 물가상승률 1.153은 2018년 1월~2024년 1월까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과임.

3) 2025년부터 1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를 가정하고 소요재정 추계

자료: 박은정 외(2024). 육아정책의 발전적 로드맵 제시를 위한 현금급여 제도 발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280-283을 참조하여 재구성함.

18세 미만으로 확대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35조5000억 원, 연평균 7조 1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sup>8)</sup> 또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24년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하고 지급액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2026년에는 약 15조 3천억 원, 2029년에는 약 13조 7천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 2025년 아동수당 예산인 1조 9,588억원을 수배로 확대하는 것이다.

아동수당뿐만 아니라 현재 제시된 우리아이 자립펀드도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18년 동안 지원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동수당과 유사한 재원 규모가 투입되어야 하는 정책이다. 이외에 여러 세제지원 정책도 재원 확보라는 선결과제를 안고 있다. 최근 세수 감소로 인한 재원 부족 문제가 예상되므로,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 다. 현금 지원의 효과성과 구조적 한계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는 아동가구 현금 지원 정책들이 저출생 정책으로 분류되어 있다. 현금 지원 정책의 확대가 저출생 해결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해서는 상이한 연구 결과들이 존재한다. 투입에 비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출산시기만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반면 일정 부분 합계출산율에 긍정적 영향이 있다는 국내 연구 결과도 있다.<sup>9)</sup>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목적과 방향성에 따라 정책이 정책의 수요자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달라진다. 현 정부가 아동가구의 현금 지원 정책을 저출생 정책으로 확대할 것인지, 생애 초기 소득보장에 방점을 둘 것인지에 따라 정책적 메시지와 정책효과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것이다.

한편, 현금지원이 아동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단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으나, 현금 지원이 의도한 중장기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

8) 서울신문(2025. 5. 29). [https://m.go.seoul.co.kr/news/politics/2025/05/29/20250529008001?cp=go&utm\\_source=chatgpt.com](https://m.go.seoul.co.kr/news/politics/2025/05/29/20250529008001?cp=go&utm_source=chatgpt.com)

9) 김사현, 홍경준(2014). 출산율 및 여성노동참여율에 대한 가족정책의 영향: 정책균형관점에서 본 OECD 21개국 비교연구. 사회복지정책. 41(2), 213-238; 최영, 김슬기(2017). OECD 국가의 아동가족 현금지원정책과 출산율 간의 관계: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60, 59-86; Parent, D., & Wang, L. (2007). Tax Incentives and Fertility in Canada: Quantum vs tempo effects.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Revue canadienne d'économie, 40(2), 371-400.

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이 함께 모색될 필요가 있다. 즉, 경직된 노동시장, 장시간 노동, 성별 분업 및 여성 경력 단절, 주거 문제 등 보다 사회구조적인 관점에서 다층적이고 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4. 향후 과제

### 가. 현금급여 지급액 기준 마련<sup>10)</sup>

OECD의 상당수 국가들은 아동 최저 생계비, 양육비용, 국가 예산 등을 고려하여 아동수당(가족수당)의 급여액을 조정한다. 즉, 현금급여의 정치성에 의해 지급액이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급여액 조정 관련 기준을 마련하여 지급한다. 예를 들면, 독일은 최저생계비, 스웨덴은 아동당 소비지출액, 프랑스는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2025년부터 모든 아동에 대한 최저생계 및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소득보장 제도로 아동기본보장(Kindergrundsicherung) 제도를 도입하였다. 아동수당에 해당하는 아동보장급여(Kindergarantiebetrug)와 저소득층 지원인 아동추가급여(Kinderzusatzbetrag)를 통해 모든 아동이 출생 후 독립적 경제활동을 할 때까지 기본적인 기초생계 소득을 보장받고, 추가 지원을 통해 아동 빈곤을 방지한다.

단기적으로 개별 현금급여를 확대하는 정책에서 더 나아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객관적인 지표에 따른 급여액 지급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현금지원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나갈 필요가 있다.

### 나. 소득에 따른 격차 해소 방안 모색 필요

이번 공약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세제 지원 정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세제 지원 확대는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세제 혜택이나 보편적 자산형성 지원 제도는 설계 방식에 따라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을 받는 역진적 구조를 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제도의 세부 설계 단계에서 소득에 따른 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자녀장려금은 역진성을 완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이 어느 수준까지 완화 효과를 미치는지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 부적인 세제지원 제도의 확대 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아이자립펀드 제도는 저소득층 지원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베이비본드(Baby Bond) 제도나 영국의 아동신탁기금(Child Trust Fund)과 달리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자산형성 지원 제도로 설계되어 있다. 보편적인 우리아이자립펀드 제도만으로는 소득 수준에 따라 부모의 매칭 납입 능력에 차이가 발생하여, 장기적으로 아동 간 자산 형성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소득에 따른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기존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디딤씨앗통장 제도를 어떻게 우리아이자립펀드와 통합하거나 보완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0) 「박은정, 유해미, 조혜주, 김연진, 서효진, 정은희(2024). 육아정책의 발전적 로드맵 제시를 위한 현금급여 제도 발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를 참조하여 작성함.